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11. .

발 의 자 : 정청래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에서 전기통신에 의한 의사소통이 일반화되고, 그 만큼 범죄에 전기통신이 이용되는 경향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전기통신의 범죄 이용 증가는 국가 수사권이 전기통신에 대한 개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

더욱이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통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공소 관련 처분이 결정되지 아닐 경우 이에 관련된 국민은 무한정 자신의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보호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됨.

따라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등을 집행하면 그 집행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수사기관이 집행한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되, 국가안보·공공의 안녕질서나 사람의 생명·신체·재

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3조의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을 “종료한”으로,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를 “종료한”으로,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을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로,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을 “관할 보통군사법원의 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그 유예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9조의3제1항 중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을 “집행이 있는”으로, “30일”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예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 중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처분을 한”을 “제공을 받은”으로, “3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적용례)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검증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u>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u>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u>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u></p>	<p>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u>종료한</u>----- -----<u>90일</u>----- ----- ----- ----- ----- -----.</p> <p>②----- ----- -----<u>종료한</u>-----<u>90일</u>----- ----- ----- -----</p>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생략)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업자에게 압수·수색·검

보통군사법원의 허가를-----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집행이 있는-----90
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유예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믿

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
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
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
을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
명·신체·재산에 위협을 초래
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경우
-----에는-----제공을 받은-----90
일-----

-----.

② (현행과 같음)